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3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결정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 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비고
기정	은평	갈현동	12-248	3.2ha	170	60	5	2	단독	2010.11.25. 서고시 제2010-421호)	갈현1구역과 연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변경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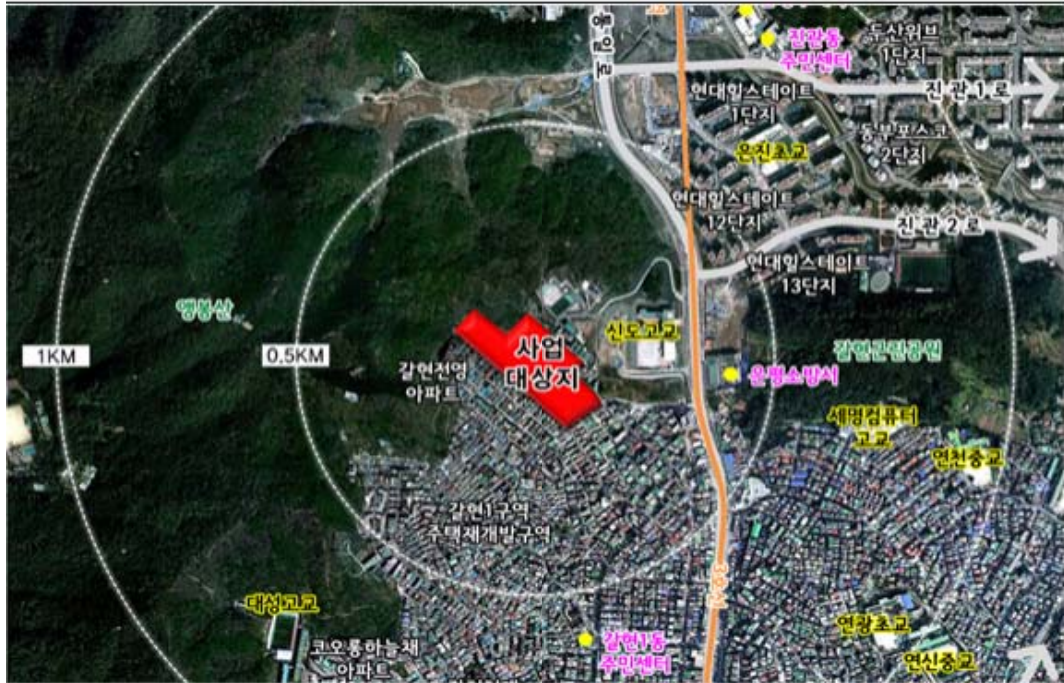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예정)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2. 위치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

3. 시민의 열람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3) 및 은평구 건축과(02-351-753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

-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도면
○ 위치도



- 정비예정구역도(해제)

